

변경대비표(일반및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클래스 신설	모펀드 운용역 변경	투자 대상 자산	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모펀드 추가	모펀드 삭제	결 산	변 동 성	변경 사항
1	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재간접형)	주 1)	-	-	-	-	-	-	-	-
2	미래에셋법인용달러 MMF(USD)	주 2)								-
3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주 1)	-	주 1)	-	-	-	-	-
4	미래에셋 OCIO-DB 표준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주 1)	-	주 1)	-	-	○	-	-
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1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1)	-	주 1)	-	-	-	-	-
6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2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1)	-	주 1)	-	-	-	-	-
7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3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1)	-	주 1)	-	-	-	-	-
8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1)	-	주 1)	-	-	-	-	-
9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	주 1)	-	주 1)	-	-	-	-	-
10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	-	주 1)	-	주 1)	-	-	-	-	-
11	미래에셋퇴직플랜 1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12	미래에셋퇴직플랜 2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13	미래에셋퇴직플랜 3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14	미래에셋퇴직플랜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15	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16	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17	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18	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19	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주 2)	-	주 2)	-	-	-	-	-
20	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	주 2)	-	주 2)	-	-	-	-	-
21	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22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1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23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10 증권투자신탁 2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24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10 증권투자신탁 3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25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3/10 증권투자신탁 4 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no.	펀드명	클래스 신설	모펀드 운용역 변경	투자 대상 자산	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모펀드 추가	모펀드 삭제	결 산	변 동 성	변경 사항
26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 4/15 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27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	주 2)	-	주 2)	-	-	-	-	-
28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	주 2)	-	주 2)	-	-	-	-	-
29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주 2)	-	주 2)	-	-	-	-	-
30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1)	-	-	-
31	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1)	-	-	-
32	미래에셋자산관리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2)	-	-	-
33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3)	-	-	-
34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3)	-	-	-
35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3)	-	-	-
36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3)	-	-	-
37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3)	-	-	-
38	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3)	-	○	-
39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주 3)	-	○	-
40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	-	○	주 3)	-	-	-	○	9), 10)
41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	-	-	주 3)	-	-	-	-	-
42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 2호(주식-재간접형)	-	-	-	-	-	-	○	○	-
43	미래에셋영리한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	-	-	-	-	-	○	○	11)
44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	-	-	-	-	-	○	○	-
45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	-	-	-	-	○	○	-

2. 변경 사항:

- 1) 클래스 신설(및 가입자격 변경)
-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 3) 투자대상자산 추가
- 4)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
- 5) 모투자신탁 추가
- 6) 모투자신탁 삭제
- 7)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8)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 9)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 10) 법 개정사항 반영
- 11) 이해관계인 삭제

3. 효력발생예정일: 2023년 07월 28일 (금)

4. 변경 내용:

1) 클래스 신설(및 가입자격 변경)

주 1)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신설>	[아래 참조 1]
제37조(보수)	<신설>	[아래 참조 1]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환매수수료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아래 참조 1]

[참조1]

구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	환매
----	------	---------	----	----

			판매 수수료	수수료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0.58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0.29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 2)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류C-a: <u>500만 달러(USD) 이상 5000만 달 러(USD) 미만 가입자</u>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류C-a: <u>500만 달러(USD) 이상 2000만 달 러(USD) 미만 가입자</u>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 의 발행 및 전자등 록)	<신설>	[아래 참조 1]
제37조(보수)	<신설>	[아래 참조 1]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환매수수료	- 종류C-a 가입자격: <u>500만 달러(USD) 이상 5000만 달러(USD) 미만 가입자</u>	- 종류C-a 가입자격: <u>500만 달러(USD) 이상 2000만 달러(USD) 미만 가입자</u>
제1부. 1. 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신설>	[아래 참조 1]
제2부. 1. 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제 2 부. 6. 집합투 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참조1]

구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종류 C-1	2000 만 달러(USD) 이상 5000 만 달러(USD) 미만 가입자	0.07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투자설명서]

주1)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구용덕(책임), 김재현(부책임)	김재현

주2)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구용덕(책임), 김재현(부책임)	김재현

3) 투자대상자산 추가

[집합투자계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15 조(투자대상 자산 등)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u>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신설></p> <p>4.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p>
--	--	--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8. 가. 투자대상	<p>[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p> <p><생략></p> <p><신설></p>	<p>[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환매조건부매수]</p> <p><생략></p> <p>※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p>
	<p>[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p> <p><생략></p> <p><신설></p>	<p>[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p> <p><생략></p> <p>※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p>

4)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

주1)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투자대상	<p>[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p> <p><생략></p> <p><신설></p>	<p>[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환매조건부매수]</p> <p><생략></p> <p>※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p>

주2)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p>[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p>	<p>[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환매조건부매수]</p>

사항 1. 나. (1) 투자 대상	<생략> <신설>	<생략>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	--------------	---

주3)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투자 대상	[단기대출 주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 <신설> <생략> <신설>	[단기대출 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 <u>환매조건부매수</u> <생략>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5) 모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미래에셋 AI 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신설>	[모자형 구조]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신설>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이 투자신탁은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투자등급회사채(국제신용평가등급 기준 BBB-이상)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Core α 포트폴리오와 Satellite 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시 당사의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AI퀀트모델을 활용합니다. 모델

		을 통하여 선별되는 종목들을 기초로 운용역이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모델을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도록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이 학습하지 못하였거나 경험하지 못한 이벤트 발생, 시장이 급변동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운용역이 적극 개입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차, 정보의 비대칭, 시장환경 변화, 시장 분위기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 및 대응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법인에 운용을 위탁합니다.
제2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신설>	-미래에셋시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6) 모투자신탁 삭제

주1)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모자형 구조] - <삭제>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삭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제2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삭제>

주2)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 구조] - <삭제>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삭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제2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삭제>

주3)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 구조] - <삭제>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삭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삭제>
제2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삭제>

7)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투자비용>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업데이트</u>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u>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u>
제 5 부. 4.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u>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u>

8)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u>2</u>	<u>3</u>	<u>15.26</u>	<u>11.65</u>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u>1</u>	<u>2</u>	<u>30.14</u>	<u>23.13</u>
미래에셋영리한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u>3</u>	<u>5</u>	-	<u>2.99</u>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u>2</u>	<u>3</u>	-	<u>10.42</u>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4	4	<u>7.76</u>	<u>5.56</u>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u>2</u>	<u>3</u>	<u>21.49</u>	<u>14</u>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u>2</u>	<u>3</u>	<u>15.48</u>	<u>14.06</u>

9)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 투자상품)	<신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10)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생략></u>	2. <생략> 나. <삭제>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u>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가. 투자 대상	-채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삭제>
제2부 8. 나. 투자 제한	-동일종목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u> <u>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생략></u>	-동일종목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삭제>

11) 이해관계인 삭제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부. 1. 가. 회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 <u>일반사무관리회사 : 미래에셋펀드서비스</u> - <u>신탁업자 : 국민은행</u>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삭제>

*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변경 내용은 동일함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1) 성명: 김재현 본부장

2) 주요 경력

(1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리서치부문

2. 운용 현황(2023.06.30 현재)

투자신탁명	설정일	설정액(백만원)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06-01-02	109,057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5-07-03	89,559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06-01-04	44,739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	2005-11-01	44,232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011-06-13	40,711

3. 운용성과(2023.06.30 현재, 기간별 수익률, %)

투자신탁명	1개월	3개월	6개월	설정 이후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3	4.75	17.55	163.45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1.34	8.02	8.16	0.71
미래에셋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0	4.73	17.59	173.74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	1.85	6.24	18.16	168.25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1.25	4.83	17.93	52.80